총학생회 학생회비 수납 및 환불 기준세칙

제1조(목적) 본 세칙은 총학생회 학생회비의 수납 및 환불에 관한 세부사항을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학생회비 납부)

- 1. 학생회비는 우리 대학 매 학기별 등록 기간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2. 회원이 등록 기간 내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제3조에 의거하여 기간 외 납부가 가능하다.
- 3. 학생회비 납부는 학기당 1회만 가능하다.

제3조(학생회비 기간 외 납부)

- 1. 학생회비 기간 외 납부는 해당 학기에 우리 대학 등록금을 납부한 회원 중 등록 기간 내 학생회 비를 미납한 자에 한하여 가능하다.
- 2. 학생회비 기간 외 납부는 우리 대학 매 학기별 개강 3주차 첫날부터 중간고사 시행 전날까지 가능하며, 주말 및 공휴일에는 납부가 불가하다.
- 3. 학생회비 기간 외 납부는 회원 본인이 소정의 서류를 작성하고 총학생회 집행부에 제출하여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.
- 4. 총학생회 집행부는 기간 외 납부 기간 중 2주에 1회 납부자 명단을 포함한 학생회비 기간 외 납부 현황을 학생처에 제출하고, 해당 학생회비 전액을 학교 지정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.

제4조(학생회비 환불)

- 1. 회원이 본인의 기납부 학생회비 환불을 원하는 경우 본인이 소정의 서류를 작성하고 총학생회 집행부에 제출하여 환불을 신청하여야 한다.
- 2. 학생회비 환불 신청 기간은 우리 대학 매 학기별 개강 2주차 첫날부터 3주차 마지막날까지로 하되 공휴일에는 환불 신청이 불가하다.
- 3. 학생회비 화불자는 해당 학기 학생회비 재납부가 불가하다.
- 4. 총학생회 집행부는 학생회비 환불 신청 기간 종료 후 업무일 3일 이내에 해당 학기 환불 신청 서류 일체를 학생처에 제출함으로써 납부자 본인 계좌로 환불을 의뢰하여야 한다.

제5조(정보 공개) 총학생회 집행부는 학생회비 납부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인의 학생회비 수납 및 환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.

제6조(관리감독)

- 1. 기간 외 납부 학생회비는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.
- 2. 총학생회 집행부는 학생회비 기간 외 납부와 환불에 대하여 대의원회 상임위원회의 관리감독 및 감사를 받아야 한다.

부 칙

이 시행세칙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